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금지 명시  
및 처벌 등 》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53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 목 차

|                                                                                           |   |
|-------------------------------------------------------------------------------------------|---|
| I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제2209753호) .....                                                           | 1 |
| 1. 제안경위 .....                                                                             | 1 |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3. 검토의견 .....                                                                             | 2 |
| 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금지 명시 및 처벌<br>(안 제24조제5항 및 제89조제3호의2 신설) .....                     | 2 |
| 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 중인<br>건설기술인의 사업 참여 여부 확인 의무 부여<br>(안 제2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 7 |

## I.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제2209753호)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11.

다. 회 부 일 : 2025. 4. 14.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업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9조제3호의2 신설).

### 3. 검토의견

#### 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금지 명시 및 위반 시 처벌(안 제24조제5항 및 제89조제3호의2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br>~ ④ (생략)<br><u>&lt;신설&gt;</u>                                                    |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br>~ ④ (현행과 같음)<br>⑤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br>건설기술인은 업무정지 기간에는 업<br>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br>지 건설기술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br>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br>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br>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 3. (생략)<br><u>&lt;신설&gt;</u> | 제89조(벌칙) -----<br>-----<br>-----<br>1. ~ 3. (현행과 같음)<br>3의2.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따라<br>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거나<br>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                             |
| 4의2. ~ 6. (생략)                                                                                            | 4의2. ~ 6.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건설기술인<sup>1)</sup>이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

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4조제1항2)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기술인이 근무처·

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 가. 기계    | 1)공조냉동 및 설비 2)건설기계 3)용접 4)승강기 5) 일반기계                                                                         |
| 나. 전기·전자 | 1)철도신호 2)건축전기설비 3)산업계측제어                                                                                      |
| 다. 토목    | 1)토질·지질 2)토목구조 3)항만 및 해안 4)도로 및 공항 5)철도·삭도<br>6)수자원개발 7)상하수도 8)농어업토목 9)토목시공 10)토목품질관리<br>11)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지적 |
| 라. 건축    | 1)건축구조 2)건축기계설비 3)건축시공 4)실내건축 5)건축품질관리<br>6)건축계획·설계                                                           |
| 마. 광업    | 1)화약류관리 2)광산보안                                                                                                |
| 바. 도시·교통 | 1)도시계획 2)교통                                                                                                   |
| 사. 조경    | 1)조경계획 2)조경시공관리                                                                                               |
| 아. 안전관리  | 1)건설안전 2)소방 3)가스 4)비파괴검사                                                                                      |
| 자. 환경    | 1)대기관리 2)수질관리 3)소음진동 4)폐기물처리 5)자연환경 6)토양환경<br>7) 해양                                                           |
| 차. 건설지원  | 1)건설금융·재무 2)건설기획 3)건설마케팅 4)건설정보처리                                                                             |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sup>3)</sup>을 빌려 준 경우 등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제31조제1항<sup>4)</sup>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를 규정하면서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제91조제3항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3의2.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이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4.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호5)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외에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업무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그 처분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사례<sup>6)</sup>들이 있음.

이에 비해,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와 관련된 현행법 규정은 법률에 따른 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의 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

5)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8.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의2(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규정이 없어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바,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다른 법률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건설 관련 업무수행의 자격이 정지되는 것인바, 자격 없는 자의 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의  
사업 참여 여부 확인 의무 부여(안 제2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br>~ ④ (생략) |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br>~ ④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⑥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br>그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하는 사업<br>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br>에 있는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br>참여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br>업에 참여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즉시<br>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br>또는 인·허가를 요청한 자에게 교체<br>를 요청하여야 한다. |
| <신설>                              | ⑦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br>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한 건<br>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처분 사실 확인<br>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br>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신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br>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br>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건설<br>기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br>및 경력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br>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br>정한다.                                                      |
| ⑤ (생략)                            | ⑨ (현행 제5항과 같음)                                                                                                                                                                                      |

개정안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4조제3항7)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의 역할과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7)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3의2.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이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4.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③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발주하거나 인·허가하는 사업에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건설기술인이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여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인·허가를 요청한 자에게 교체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신설)으로써,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처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조제7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제공하도록(안 제24조제8항 신설) 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권한과 관련 자료<sup>8)</sup>를 가지고

---

8)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있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의 확인 및 교체 요청을 통해,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행정처분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